

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·지원 조례

(제정) 1995. 05. 14 조례 제0262호
(전문개정) 2007. 10. 02 조례 제0681호
(일부개정) 2011. 01. 12 조례 제 831호
(일부개정) 2012. 01. 11 조례 제 883호
(일부개정) 2017. 10. 11 조례 제1221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
제·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
(일부개정) 2018. 08. 16 조례 제1272호
(일부개정) 2020. 01. 02 조례 제1373호

제1조(목적) 이 「조례」는 지역사회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 복지구현을 위하여 설립된 강릉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2. 01. 11>

제2조(설립 및 운영) ① 강릉문화재단(이하 “재단”이라 한다)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 <개정 2011. 01. 12, 2012. 01. 11>

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「정관」으로 정한다.

제2조의2(기본계획 수립) ① 문화재단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
1. 재단의 육성·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시책방향
2. 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·프로그램·시설·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
3. 재단과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재단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[본조신설 2020.1.2.]

제3조(정관) ① 재단의 「정관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 2. 명칭
 3. 사무소의 소재지
 4. 자산 및 예산·회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 01. 11, 2018. 08. 16>
 5.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 01. 11>
 6. 이사회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 01. 11>
 7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 01. 11>
 8. 공고에 관한 사항 <개정 2012. 01. 11>
 9. 「정관」의 변경에 관한 사항 <신설 2012. 01. 11>
 10.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 11. 해산에 관한 사항
 12. 그 밖에 강릉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<개정 2011. 01. 12, 2012. 01. 11> <중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18. 08. 16>
- ② 재단이 「정관」을 제정·변경하려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01. 12, 2017. 10. 11, 2018. 08. 16>

제4조(임원)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.

②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공개모집하거나 이사회가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 다만, 이사회가 추천이 없거나 책임자가 없을 경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

③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하고, 그 외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. <개정 2018. 08. 16>

④ 이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「정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[본조신설 2012. 01. 11]

제5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

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상임이사는 「정관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분장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언·진술·보고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 01. 11]

제6조(이사회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「정관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되며, 이사회를 총괄한다. <개정 2017. 10. 11>

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 10. 11>

[본조신설 2012. 01. 11]

제7조(직원의 임면(任免)) 재단의 직원은 「정관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. [본조신설 2012. 01. 11]

제8조(대상사업) ① 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한다.

1. 문화예술의 전승과 창작·보급
2.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자료수집 및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발 및 개최
5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6. 전통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발굴·보존 등 활동 지원
7. 그 밖에 문화예술시설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

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비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

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01. 11]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4조에서 이동]

제9조(재원조성 등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강릉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출연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1. 01. 12>

② 재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1. 01. 12>

③ 시는 재단의 시설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01. 12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5조에서 이동]

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10. 11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6조에서 이동]

제11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7조에서 이동]

제12조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강릉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01. 12, 2017. 10. 11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8조에서 이동]

제13조(결산서의 제출)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01. 12, 2017. 10. 11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9조에서 이동]

제14조(보고·검사 및 감사) ① 시장 또는 시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 등에 관하여 보고·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01. 11>

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01. 11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10조에서 이동]

제15조(사업연도)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1. 01. 12>

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11조에서 이동]

제16조 삭제<2017. 10. 11>

제17조(시행규칙) 이 「조례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[본조개정 2012. 01. 11 제12조에서 이동]

부칙

이 「조례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<「조례」 제831호, 2011. 01. 12>

이 「조례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<「조례」 제883호, 2012. 01. 11>

이 「조례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<「조례」 제1221호, 2017. 10. 11>

제1조(시행일) 이 「조례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~제3조 (생략)

부칙

<「조례」 제1272호, 2018. 08. 16>

이 「조례」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